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1. 28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기후환경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11. 14.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
- 상정 및 의결: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11. 28.)

2. 제안이유

-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·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활한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조정(안 별표 수정)
 - 기본(750ℓ 까지): 18,900원 → 20,980원
 - 초과(100ℓ 마다): 1,640원 → 1,820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하수도법」 제41조
- 입법예고(2025. 10. 13.~11. 3.): 의견없음

- 규제심사 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조례·규칙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·운반업체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처리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「하수도법」 제41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2023년 수수료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상태인 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대구시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750ℓ 수거 시 2,080원을 인상하고, 초과 100ℓ 마다 180원을 인상하여 기존대비 11%를 인상함.
- 또한, 2025년 9월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분뇨 수집·운반업체의 운영 안정성과 지역 내 공중위생 유지는 물론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 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